포레나 평택화양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은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미기재된 사항이나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0.27.입니다. (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 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평택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27.)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2022.04.27.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27.)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2022.04.27.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이후에도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평택시 주택과-43448호(2022.10.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7-2BL
-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9층, 10개동, 총 995세대 [특별공급 456세대(일반[기관추천] 82세대, 다자녀가구 96세대, 신혼부부 169세대, 노부모부양 27세대, 생애최초 8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 주차대수 : 1,345대(아파트 1,340대, 근린생활시설 5대) 계획
- ■ 입주시기 : 2025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민영주택	2022000741	01	074.9989A	74A	74.9989	22.1122	97.1111	52.4322	149.5433	42.7099	78	7	7	16	2	7	39	39	3
		02	074.9937B	74B	74.9937	24.2742	99.2679	52.4286	151.6965	42.7070	75	7	7	15	2	7	38	37	3
		03	074.9959C	74C	74.9959	22.0521	97.0480	52.4301	149.4781	42.7082	75	7	7	15	2	7	38	37	3
		04	074.9866D	74D	74.9866	22.2760	97.2626	52.4236	149.6862	42.7029	53	5	5	10	1	5	26	27	2
		05	084.9984A	84A	84.9984	25.0490	110.0474	59.4229	169.4704	48.4044	205	20	20	41	6	20	107	98	8
		06	084.9531B	84B	84.9531	25.2829	110.2360	59.3913	169.6273	48.3786	363	36	36	72	10	36	190	173	14
		07	099.9952A	99A	99.9952	29.5762	129.5714	69.9073	199.4787	56.9447	146	–	14	–	4	–	18	128	6
	합계										995	82	96	169	27	82	456	539	39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0.3058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공급세대수	동(라인)구분	층구분	해당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입주시
											2023.05.15	2023.09.15	2024.02.15	2024.08.14	2025.01.15	2025.06.16	
74A	78	105동4호	2층	1	60,072,900	317,327,100	–	377,400,000	10,000,000	2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113,220,000
			3층	1	60,072,900	319,327,100	–	379,400,000	10,000,000	27,940,000	37,940,000	37,940,000	37,940,000	37,940,000	37,940,000	37,940,000	113,820,000
			4층	1	60,072,900	323,327,100	–	383,400,000	10,000,000	28,34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115,020,000
			5~10층	6	60,072,900	331,227,100	–	391,300,000	10,000,000	29,130,000	39,130,000	39,130,000	39,130,000	39,130,000	39,130,000	39,130,000	117,390,000
			11~20층	10	60,072,900	335,127,100	–	395,200,000	10,000,000	29,520,000	39,520,000	39,520,000	39,520,000	39,520,000	39,520,000	39,520,000	118,560,000
			21층 이상	7	60,072,900	341,127,100	–	401,200,000	10,000,000	30,120,000	40,120,000	40,120,000	40,120,000	40,120,000	40,120,000	40,120,000	120,360,000
		106동4호 107동3호	2층	2	60,072,900	306,227,100	–	366,300,000	10,000,000	26,63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109,890,000
			3층	2	60,072,900	308,227,100	–	368,300,000	10,000,000	2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110,490,000
			4층	2	60,072,900	312,027,100	–	372,100,000	10,000,000	27,210,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111,630,000
			5~10층	12	60,072,900	319,727,100	–	379,800,000	10,000,000	27,980,000	37,980,000	37,980,000	37,980,000	37,980,000	37,980,000	37,980,000	113,940,000
			11~20층	20	60,072,900	323,527,100	–	383,600,000	10,000,000	28,360,000	38,360,000	38,360,000	38,360,000	38,360,000	38,360,000	38,360,000	115,080,000
			21층 이상	14	60,072,900	329,327,100	–	389,400,000	10,000,000	28,940,000	38,940,000	38,940,000	38,940,000	38,940,000	38,940,000	38,940,000	116,820,000
74B	75	102동1호 103동1호	2층	2	60,068,700	314,431,300	–	374,500,000	10,000,000	27,450,000	37,450,000	37,450,000	37,450,000	37,450,000	37,450,000	37,450,000	112,350,000
			3층	2	60,068,700	316,331,300	–	376,400,000	10,000,000	27,640,000	37,640,000	37,640,000	37,640,000	37,640,000	37,640,000	37,640,000	112,920,000
			4층	2	60,068,700	320,331,300	–	380,400,000	10,000,000	28,040,000	38,040,000	38,040,000	38,040,000	38,040,000	38,040,000	38,040,000	114,120,000
			5~10층	12	60,068,700	328,131,300	–	388,200,000	10,000,000	2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116,460,000
			11~20층	20	60,068,700	332,031,300	–	392,100,000	10,000,000	29,210,000	39,210,000	39,210,000	39,210,000	39,210,000	39,210,000	39,210,000	117,630,000
			21층 이상	12	60,068,700	337,931,300	–	398,000,000	10,000,000	2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119,400,000
		104동1호	2층	1	60,068,700	325,731,300	–	385,800,000	10,000,000	28,580,000	38,580,000	38,580,000	38,580,000	38,580,000	38,580,000	38,580,000	115,740,000
			3층	1	60,068,700	327,831,300	–	387,900,000	10,000,000	28,790,000	38,790,000	38,790,000	38,790,000	38,790,000	38,790,000	38,790,000	116,370,000
			4층	1	60,068,700	331,831,300	–	391,900,000	10,000,000	29,190,000	39,190,000	39,190,000	39,190,000	39,190,000	39,190,000	39,190,000	117,570,000
			5~10층	6	60,068,700	339,931,300	–	400,000,000	10,000,000	3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120,000,000
			11~20층	10	60,068,700	343,931,300	–	404,000,000	10,000,000	3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121,200,000
			21층 이상	6	60,068,700	350,031,300	–	410,100,000	10,000,000	31,010,000	41,010,000	41,010,000	41,010,000	41,010,000	41,010,000	41,010,000	123,030,000
74C	75	102동2호 103동2호	2층	2	60,070,500	309,729,500	–	369,800,000	10,000,000	26,980,000	36,980,000	36,980,000	36,980,000	36,980,000	36,980,000	36,980,000	110,940,000
			3층	2	60,070,500	311,629,500	–	371,700,000	10,000,000	27,170,000	37,170,000	37,170,000	37,170,000	37,170,000	37,170,000	37,170,000	111,510,000
			4층	2	60,070,500	315,529,500	–	375,600,000	10,000,000	27,560,000	37,560,000	37,560,000	37,560,000	37,560,000	37,560,000	37,560,000	112,680,000
			5~10층	12	60,070,500	323,329,500	–	383,400,000	10,000,000	28,34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115,020,000
			11~20층	20	60,070,500	327,129,500	–	387,200,000	10,000,000	28,720,000	38,720,000	38,720,000	38,720,000	38,720,000	38,720,000	38,720,000	116,160,000
			21층 이상	12	60,070,500	332,929,500	–	393,000,000	10,000,000	2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117,900,000
		104동2호	2층	1	60,070,500	320,929,500	–	381,000,000	10,000,000	2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114,300,000
			3층	1	60,070,500	322,929,500	–	383,000,000	10,000,000	2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114,900,000
			4층	1	60,070,500	326,929,500	–	387,000,000	10,000,000	2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116,100,000
			5~10층	6	60,070,500	334,929,500	–	395,000,000	10,000,000	2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118,500,000
			11~20층	10	60,070,500	338,929,500	–	399,000,000	10,000,000	2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119,700,000
			21층 이상	6	60,070,500	344,929,500	–	405,000,000	10,000,000	3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121,500,000
74D	53	105동1호 106동1호	2층	2	60,063,100	317,936,900	–	378,000,000	10,000,000	2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113,400,000
			3층	2	60,063,100	319,936,900	–	380,000,000	10,000,000	2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114,000,000
			4층	2	60,063,100	323,936,900	–	384,000,000	10,000,000	2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115,200,000
			5~10층	12	60,063,100	331,836,900	–	391,900,000	10,000,000	29,190,000	39,190,000	39,190,000	39,190,000	39,190,000	39,190,000	39,190,000	117,570,000
			11~20층	20	60,063,100	335,836,900	–	395,900,000	10,000,000	29,590,000	39,590,000	39,590,000	39,590,000	39,590,000	39,590,000	39,590,000	118,770,000
			21층 이상	15	60,063,100	341,736,900	–	401,800,000	10,000,000	30,180,000	40,180,000	40,180,000	40,180,000	40,180,000	40,180,000	40,180,000	120,540,000
84A	205	101동4호 110동4호	2층	2	68,082,300	359,817,700	–	427,900,000	10,000,000	32,790,000	42,790,000	42,790,000	42,790,000	42,790,000	42,790,000	42,790,000	128,370,000
			3층	2	68,082,300	362,017,700	–	430,100,000	10,000,000	33,010,000	43,010,000	43,010,000	43,010,000	43,010,000	43,010,000	43,010,000	129,030,000
			4층	2	68,082,300	366,517,700	–	434,600,000	10,000,000	33,460,000	43,460,000	43,460,000	43,460,000	43,460,000	43,460,000	43,460,000	130,380,000
			5~10층	12	68,082,300	375,417,700	–	443,500,000	10,000,000	3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133,050,000
			11~20층	20	68,082,300	379,917,700	–	448,000,000	10,000,000	3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134,400,000
			21층 이상	15	68,082,300	386,617,700	–	454,700,000	10,000,000	35,47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136,410,000
		101동2호 108동4호 109동4호	2층	3	68,082,300	355,517,700	–	423,600,000	10,000,000	32,360,000	42,360,000	42,360,000	42,360,000	42,360,000	42,360,000	42,360,000	127,080,000
			3층	3	68,082,300	357,717,700	–	425,800,000	10,000,000	32,580,000	42,580,000	42,580,000	42,580,000	42,580,000	42,580,000	42,580,000	127,740,000
			4층	3	68,082,300	362,117,700	–	430,200,000	10,000,000	33,02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129,060,000
			5~10층	18	68,082,300	371,017,700	–	439,100,000	10,000,000	33,910,000	43,910,000	43,910,000	43,910,000	43,910,000	43,910,000	43,910,000	131,730,000
			11~20층	30	68,082,300	375,417,700	–	443,500,000	10,000,000	3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133,050,000
			21층 이상	20	68,082,300	382,117,700	–	450,200,000	10,000,000	3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135,060,000
		108동2호 109동2호 110동2호	2층	3	68,082,300	368,317,700	–	436,400,000	10,000,000	33,640,000	43,640,000	43,640,000	43,640,000	43,640,000	43,640,000	43,640,000	130,920,000
			3층	3	68,082,300	370,617,700	–	438,700,000	10,000,000	33,870,000	43,870,000	43,870,000	43,870,000	43,870,000	43,870,000	43,870,000	131,610,000
			4층	3	68,082,300	375,217,700	–	443,300,000	10,000,000	34,330,000	44,330,000	44,330,000	44,330,000	44,330,000	44,330,000	44,330,000	132,990,000
			5~10층	18	68,082,300	384,317,700	–	452,400,000	10,000,000	35,240,000	45,240,000	45,240,000	45,240,000	45,240,000	45,240,000	45,240,000	135,720,000
			11~20층	30	68,082,300	388,917,700	–	457,000,000	10,000,000	3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137,100,000
			21층 이상	18	68,082,300	395,717,700	–	463,800,000	10,000,000	36,380,000	46,380,000	46,380,000	46,380,000	46,380,000	46,380,000	46,380,000	139,140,000
84B	363	101동3호 110동3호	2층	2	68,046,100	356,253,900	–	424,300,000	10,000,000	32,430,000	42,430,000	42,430,000	42,430,000	42,430,000	42,430,000	42,430,000	127,290,000
			3층	2	68,046,100	358,453,900	–	426,500,000	10,000,000	32,650,000	42,650,000	42,650,000	42,650,000	42,650,000	42,650,000	42,650,000	127,950,000
			4층	2	68,046,100	362,953,900	–	431,000,000	10,000,000	3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129,300,000
			5~10층	12	68,046,100	371,853,900	–	439,900,000	10,000,000	33,990,000	43,990,000	43,990,000	43,990,000	43,990,000	43,990,000	43,990,000	131,970,000
			11~20층	20	68,046,100	376,253,900	–	444,300,000	10,000,000	34,43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133,290,000
			21층 이상	15	68,046,100	382,953,900	–	451,000,000	10,000,000	3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135,300,000
		101동1호 108동3호 109동3호	2층	3	68,046,100	352,053,900	–	420,100,000	10,000,000	3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126,030,000
			3층	3	68,046,100	354,253,900	–	422,300,000	10,000,000	32,230,000	42,230,000	42,230,000	42,230,000	42,230,000	42,230,000	42,230,000	126,690,000
			4층	3	68,046,100	358,653,900	–	426,700,000	10,000,000	32,670,000	42,670,000	42,670,000	42,670,000	42,670,000	42,670,000	42,670,000	128,010,000
			5~10층	18	68,046,100	367,453,900	–	435,500,000	10,000,000	33,550,000	43,550,000	43,550,000	43,550,000	43,550,000	43,550,000	43,550,000	130,650,000
			11~20층	30	68,046,100	371,853,900	–	439,900,000	10,000,000	33,990,000	43,990,000	43,990,000	43,990,000	43,990,000	43,990,000	43,990,000	131,970,000
			21층 이상	20	68,046,100	378,453,900	–	446,500,000	10,000,000	34,650,000	44,650,000	44,650,000	44,650,000	44,650,000	44,650,000	44,650,000	133,950,000
		105동2,3호 106동2,3호 107동1,2호 108동1호 109동1호 110동1호	2층	9	68,046,100	364,753,900	–	432,800,000	10,000,000	33,280,000	43,280,000	43,280,000	43,280,000	43,280,000	43,280,000	43,280,000	129,840,000
			3층	9	68,046,100	367,053,900	–	435,100,000	10,000,000	33,510,000	43,510,000	43,510,000	43,510,000	43,510,000	43,510,000	43,510,000	130,530,000
			4층	9	68,046,100	371,553,900	–	439,600,000	10,000,000	33,960,000	43,960,000	43,960,000	43,960,000	43,960,000	43,960,000	43,960,000	131,880,000
			5~10층	54	68,046,100	380,653,900	–	448,700,000	10,000,000	34,870,000	44,870,000	44,870,000	44,870,000	44,870,000	44,870,000	44,870,000	134,610,000
			11~20층	90	68,046,100	385,153,900	–	453,200,000	10,000,000	35,320,000	45,320,000	45,320,000	45,320,000	45,320,000	45,320,000	45,320,000	135,960,000
			21층 이상	62	68,046,100	391,953,900	–	460,000,000	10,000,000	3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138,000,000
99A	146	102동3,4호 103동3,4호	2층	4	80,094,500	385,095,909	38,509,591	503,700,000	10,000,000	40,370,000	50,370,000	50,370,000	50,370,000	50,370,000	50,370,000	50,370,000	151,110,000
			3층	4	80,094,500	387,550,455	38,755,045	506,400,000	10,000,000	4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151,920,000
			4층	4	80,094,500	392,277,727	39,227,773	511,600,000	10,000,000	41,160,000	51,160,000	51,160,000	51,160,000	51,160,000	51,160,000	51,160,000	153,480,000
			5~10층	24	80,094,500	401,914,091	40,191,409	522,200,000	10,000,000	4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156,660,000
			11~20층	40	80,094,500	406,732,273	40,673,227	527,500,000	10,000,000	42,750,000	52,750,000	52,750,000	52,750,000	52,750,000	52,750,000	52,750,000	158,250,000
			21층 이상	20	80,094,500	413,914,091	41,391,409	535,400,000	10,000,000	43,540,000	53,540,000	53,540,000	53,540,000	53,540,000	53,540,000	53,540,000	160,620,000
		104동3,4호	2층	2	80,094,500	394,277,727	39,427,773	513,800,000	10,000,000	41,380,000	51,380,000	51,380,000	51,380,000	51,380,000	51,380,000	51,380,000	154,140,000
			3층	2	80,094,500	396,732,273	39,673,227	516,500,000	10,000,000	41,650,000	51,650,000	51,650,000	51,650,000	51,650,000	51,650,000	51,650,000	154,950,000
			4층	2	80,094,500	401,641,364	40,164,136	521,900,000	10,000,000	42,190,000	52,190,000	52,190,000	52,190,000	52,190,000	52,190,000	52,190,000	156,570,000
			5~10층	12	80,094,500	411,368,636	41,136,864	532,600,000	10,000,000	43,260,000	53,260,000	53,260,000	53,260,000	53,260,000	53,260,000	53,260,000	159,780,000
			11~20층	20	80,094,500	416,277,727	41,627,773	538,000,000	10,000,000	4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61,400,000
			21층 이상	12	80,094,500	423,641,364	42,364,136	546,100,000	10,000,000	44,610,000	54,610,000	54,610,000	54,610,000	54,610,000	54,610,000	54,610,000	163,830,000

※ 상기 각 회차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와 겹치는 경우에는 익일 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함.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공급대금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 시
74A	6,500,000	650,000	5,850,000
74B	7,200,000	720,000	6,480,000
74C	6,700,000	670,000	6,030,000
74D	6,700,000	670,000	6,030,000
84A	7,500,000	750,000	6,750,000
84B	7,300,000	730,000	6,570,000
99A	8,500,000	850,000	7,650,000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세대주 요건	–	–	–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82세대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 추천기관

구분	해당 추천기관	연락처
국가유공자 등(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031-259-1783
장기복무 제대 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02-2225-6378
중소기업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031-201-6942
장애인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324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9611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032-440-2968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96세대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 수에는 태아나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69세대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기간이 7년(전 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의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6호(2021.11.16.)]에 따릅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7세대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 청약자격요건 :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의 일반공급 청약 1순위 자격요건 및 세대주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⑵ 세대주일 것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2세대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①~④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 일반공급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합니다.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④ 아래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청약자격요건 :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5호(2021.11.16.)]에 따릅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 일반공급 신청자격 기본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평택시에 6개월 이상(2022.04.27.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신청이 가능한 '성년자' : ①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자)
②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③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거주 구분	청약순위	주택형	자격요건 및 안내사항
■ 평택시 및 전국지역 거주자 : 단,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 우선 (2022.04.27. 이전부터 연속 거주)	1순위	전용 85㎡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 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예치기준금액 무관)

IV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평택시 및 기타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지역별·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V 청약 신청, 당첨자 발표, 계약 일정 및 장소

■ 청약신청 일정,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 일시	신청 방법 및 신청 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11.07.(월) (인터넷 : 청약Home 09:00~17:30) (정보취약자: 견본주택 10:00~14:00)	- 인터넷 청약 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청약홈"앱 - 정보취약계층 : 견본주택(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856-1)
일반공급	1순위	평택시 및 전국지역 거주자	2022.11.08(화) 09:00~17:30	- 인터넷 청약 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청약홈"앱 - 정보취약계층 : 청약통장 가입 은행 창구
	2순위	전국지역 거주자	2022.11.09(수) 09:00~17:30	

※ 스마트폰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 접수(은행 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 시간 : 10:00 ~ 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 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 시간 : 09:00 ~ 16:00)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2.11.15.(화) - 확인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 조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 소유 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 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계약기간 내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계약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예비입주자 공급(추첨) 및 계약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2022.11.28.(월) ~ 2022.11.30.(수) (3일간) 10:00~17:00 *정부 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	- 장소: '**포레나 평택화양**' 견본주택(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856-1) - 방문일 예약 안내 - 당첨자 서류 접수 시 방문일 예약은 '**포레나 평택화양**' 홈페이지 (https://hanwha.forena.co.kr/pyeongtaek) 방문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 가능 ※ 당첨자의 예약 방문일자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계약 체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농협은행	355-0081-4298-13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분양대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 후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계약 체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 완납 시 무이자 대출 조건으로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는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세대당 2건(기존 보증 이용건 수를 합산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분양사무소)은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청약, 계약 시 분양상담사가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VI 기타사항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감리	소방감리
회사명	㈜유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케이제이엔지니어링	㈜케이제이엔지니어링	㈜케이제이엔지니어링
감리금액	3,747,486,600	768,509,000원	352,000,000	760,792,859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및 시행수탁자(신탁사)	시행위탁자(시행사)	시공사
상호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루리	주식회사 한화건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경기도 평택시 죽백3로 167-3, 3층(죽백동)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81(대야동, 모비딕빌딩 8층)
법인등록번호	110111-7125720	131311-0252521	110111-2558405
전화번호	02-3276-6400	031-653-6061	02-729-2255

- ■ 분양 문의 : 031-309-0995
- ■ 홈페이지 : https://hanwha.forena.co.kr/pyeongtaek

FORENA
포레나 평택화양
031.309.0995
총 995세대 74m²/84m²/99m²
시행사 true friend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위탁사 루리 시공사 한화건설